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8
----------	------

발의연월일 : 2014. 3. .

발 의 자 : 김병철, 홍성욱 의원
(찬성자 : 6 인)

1. 제안이유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신규구입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방세수를 증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배기량 2000cc 이상 6인승 이하 비사업용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함(안 별표 1)
 - 배기량 2,000cc이상 다목적형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등록을 할 경우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p>1. 자동차 신규등록</p> <p>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p> <p>1) 승차정원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다목적형 포함)</p> <p>① 배기량 1,000cc 이상 1,500cc 미만</p> <p>② 배기량 1,500cc 이상 2,000cc 미만</p> <p>③ 배기량 2,000cc이상</p> <p>2)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p> <p>3)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소형버스</p> <p>4)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25인승 이하인 소형버스</p> <p>5) 승차정원 26인승 이상인 대형버스</p> <p>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p> <p>1) 대형화물자동차(4.6톤 이상인 자동차)</p> <p>2) 소형화물자동차(2.5톤 이상 4.6톤 미만인 자동차)</p> <p>3) 소형화물차(2.5톤 미만인 자동차)</p> <p>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p>	<p>면제</p> <p>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p> <p>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다만,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p> <p>대당 390,000원</p> <p>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390,000원 초과할 경우 390,000원 적용)</p> <p>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650,000원 초과할 경우 650,000원 적용)</p> <p>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1,300,000원 초과할 경우 1,300,000원 적용)</p> <p>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650,000원 초과할 경우 650,000원 적용)</p> <p>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390,000원 초과할 경우 390,000원 적용)</p> <p>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195,000원 초과할 경우 195,000원 적용)</p> <p>면제</p>

2. 자동차 이전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1) 승차정원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다목적형 포함)

- ① 배기량 1,000cc 이상 1,500cc 미만
- ② 배기량 1,500cc 이상 2,000cc 미만
- ③ 배기량 2,000cc 이상

면제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130,000원 초과할 경우 130,000원 적용)

3)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소형버스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130,000원 초과할 경우 130,000원 적용)

4)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25인승 이하인 소형버스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215,000원 초과할 경우 215,000원 적용)

5) 승차정원 26인승 이상인 대형버스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435,000원 초과할 경우 435,000원 적용)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승차정원 26인승 이상인 대형버스

면제

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1) 대형화물자동차(4.6톤 이상인 자동차)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215,000원 초과할 경우 215,000원 적용)

2) 소형화물자동차(2.5톤 이상 4.6톤 미만인 자동차)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130,000원 초과할 경우 130,000원 적용)

3) 소형화물차(2.5톤 미만인 자동차)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65,000원 초과할 경우 65,000원 적용)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화물자동차

면제

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면제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등) </div>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p>“해당사항 없음”</p>
관련자료	<p>“내용은 별지 작성”</p>

관계법령 발췌사항

[도시철도법]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건설·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3.6.11> [유효기간 : 2014.12.31, 비고란 제2호과목]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제12조제1항 관련)

매입대상	매입 금액
<p>1. 자동차등록(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p> <p>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p> <p>1) 신규등록</p> <p>가) 전기자동차</p> <p>(1)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우</p> <p>(2) 길이·너비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에 따른 길이·너비 또는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p> <p>(3) 길이·너비 또는 높이 모두가 (1)에 따른 길이·너비 또는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p> <p>나) 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p> <p>(1)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경우</p> <p>(2)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인 경우</p> <p>(3) 배기량 2,000cc 이상인 경우</p> <p>(4) 다목적형의 경우</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p>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3조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그 금액으로 한다.

1. 자동차등록(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할 경우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2.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 도시철도건설자,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 금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여야 한다.
3.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경영자와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 물품과 국제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계약액의 100분의 2를 매입하여야 한다.
4.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건설공사 및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으로 인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별표 1 중 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 성 자

건설교통위원회 김 병 철 의원